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 하에 스스로 공기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19663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측정 계획 공고, 입주예정자의 입회 신청서 제출, 시공자의 입회자 선정 및 입회자에 대한 주의사항 사전 안내 등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를 구체화하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위탁 측정 대상을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로 구체화하는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19720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 개정으로 인한 일부 건축자재 명칭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합의 전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입회) 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는 입주예정자(이하 “측정현장입회자”라 한다)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측정일부터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를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입주자 모집 공고
2.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3. 그 밖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고자 하는 입주예정자는 측정일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측정 현장 입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입주예정자 중에서 신청순서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현장입회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측정현장입회자에게 주의사항, 측정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7조제2항(중전의 제1항) 중 “**시공자**”를 “**시공자 또는 측정대행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으로 한다.

별표 5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	---------	---------	--------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시 공 자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공동주택 현황	공급세대	세대별 규모				
			m ²	m ²	m ²	m ²	m ²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사업계획승인일		. . .					
측 정 자	상호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결과(단위: µg/m³ 또는 Bq/m³)

항목	측정 일시 (시간)	측정 지점 (동-호수)	거실 방향	벤젠	톨루엔	폼알데 하이드	에틸 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권고기준	-	-	-	30 이하	1,000 이하	210 이하	360 이하	700 이하	300 이하	148 이하
1지점	(:)	(-)								밀폐
										환기
										()
										입주예정자 입회 여부
2지점	(:)	(-)								밀폐
										환기
										()
										입주예정자 입회 여부
3지점	(:)	(-)								밀폐
										환기
										()
										입주예정자 입회 여부
...	(:)	(-)								밀폐
										환기
										()
										입주예정자 입회 여부
평균										밀폐
										환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공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 1부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목질판상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앞쪽 중 “목질판상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 중 “목질판상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5서식 중 “목질판상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7서식 중 “목질판상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으로 한다.

()주택 공기질 측정 계획서

시 공 자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공동주택 현황	공급세대	세대별 규모				
			m ²	m ²	m ²	m ²	m ²
측 정 자	상호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세부 측정계획

구분	측정 일시 (시간)	측정 지점 (동-호수)	거실 방향	측정 항목						
				벤젠	톨루엔	폼알데 하이드	에틸 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1지점	(:)	(-)								
2지점	(:)	(-)								
3지점	(:)	(-)								
...	(:)	(-)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계획을 위와 같이 통지(공고)합니다.

년 월 일
○ ○ 공동주택 시공사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1. 거실방향은 8방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예: 남동향, 남남향)
2. 측정 항목란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 중 측정하는 항목에 대해 ○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주택 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

① 입회 희망일 (년/월/일)			
신청인 정보	② 성명		③ 생년월일 . .
	④ 주소	(전화번호:)	
근거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입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 ○ 공동주택 시공자 귀하

※ 첨부서류: 해당 신축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약서 등) 1부
※ 측정결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됨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별표 5,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입회) 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는 입주예정자(이하 “측정현장 입회자”라 한다)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측정일부터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를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u> <u>1. 입주자 모집 공고</u> <u>2.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u> <u>3. 그 밖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u> <u>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고자 하는 입주예정자는 측정일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측정 현장 입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해야 한다.</u>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신 설>

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입주예정자 중에서 신청순서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현장입회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측정현장입회자에게 주의사항, 측정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 시공자 또는 측정대행업자-----

-----.

② 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1항-----

-----.

1. ~ 8. (현행과 같음)

④ -----

----- 별지 제1호의3
서식-----

-----.

⑤ -----
----- 제4항-----
----- 별지 제1호의3서식-----

-----.

1. ~ 3. (현행과 같음)

⑥ -----

----- 제4항-----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생활환경과	
연 락 처	(044) 201 - 6799